



보도참고자료

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
경제민주화 · 창조경제 구현

2014년 5월 1일(목) 배포

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

담당과장: 김재신(044-200-4300)

수신 즉시 보도 가능

담당: 구태모 사무관(044-200-4304)

‘보복조치 금지’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무위 의결 **보복조치에 관한 법적 금지하여 신고를 유도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**

- 사업자가 불공정 거래 행위(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)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거래중지 등 보복조치 금지한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이 정무위에서 의결됨.(5. 1.)

*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.

※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현재 하도급법 제19조(보복조치의 금지), 대규모 유통업법 제18조(불이익 등 금지)에 이미 도입 · 운영되고 있음.

1. 개정안 주요내용

가. 보복조치 금지대상의 범위(제23조의 3 신설)

- 보복조치 대상은 ①법 위반 신고*, ②분쟁조정 신청**, ③공정위 조사 협조***

*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불공정 거래 행위를 대상으로 함.

** 현행 하도급법 제19조에 이미 분쟁조정 신청이 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, 분쟁조정 신청도 직 · 간접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.

*** 경제적 약자의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,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 실태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복조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.

나. 제재 조치 수준

- 보복조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위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(제24조, 제24조의 2 개정)
- 보복조치의 악의성 및 범위반 억지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*의 벌칙으로 규정함.(제66조 제1항 제9의 3호 신설)

*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.

2. 기대 효과

-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관행을 개선하고,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.

❖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.0의 핵심가치인 개방·공유·소통·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.

 <p>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</p>	<p>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ftc.go.kr</p>	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 <p>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3.0 개방 · 공유 · 소통 · 협력</p>
--	--	---	--